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31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371호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증 정정 2
- 인천광역시조례 제6376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15호 도시관리계획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51호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59호 도시계획시설(하나래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6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20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36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2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37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24

기 타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공고 제2020-25호 공고문 47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371호(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중 정정

시보 제1830호(2020.3.30.)에 게재된 “조례 제6371호(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 4. 1.

인천광역시장

현 행	정 정	비 고
<p>[별지]</p> <p>-----</p> <p>-----</p> <p>-----</p> <p>-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p> <p>-----.</p>	<p>[별지]</p> <p>-----</p> <p>-----</p> <p>-----</p> <p>-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p> <p>-----.</p>	<p>시보 제58쪽 제7행</p>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나. 계절제 시행을 대비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제2조)

다. 계절제 시행관련 근거 법률 조항 삽입 등(제2조, 제3조 및 제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6376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를 “제18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15호

도시관리계획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2),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연수구청 공원녹지과(032-749-8723)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0. 4. 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청능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1 일원
3. 면 적: 21,753m²
4. 도시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1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동 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계	21,753	5,381	1	73	73	62	21,753	5,011	1	72	72	62			
공 원 시 설	소계	5,381	5,381	1	73	73	62	5,011	5,011	1	72	72	62	감) 370.0㎡	
	기 반 시 설	소계	1,724	1,724	-	-	-	-	1,551	1,551	-	-	-	-	감) 173.0㎡
		도로	952	952	-	-	-	-	1,074	1,074	-	-	-	-	증) 122.0㎡
		광장	772	772	-	-	-	-	477	477	-	-	-	-	감) 295.0㎡
	조경시설	613	613	-	-	-	-	613	613	-	-	-	-		
	휴양시설	35	35	-	-	-	8	23	23	-	-	-	8	감) 12.0㎡	
	유희시설	335	335	-	-	-	-	335	335	-	-	-	-		
	운동시설	1,069	1,069	-	-	-	-	1,069	1,069	-	-	-	-		
	교양시설	189	189	-	-	-	-	106	106	-	-	-	-	감) 83.0㎡	
	편익시설	1,343	1,343	-	-	-	-	1,242	1,242	-	-	-	-	감) 101.0㎡	
관리시설	73	73	1	73	73	54	72	72	1	72	72	54	감) 1.0㎡		
녹지 / 기타	16,372	-	-	-	-	-	16,742	-	-	-	-	-	-	증) 370.0㎡	
시설율(% (법정40%이하)	(5,381 ÷ 21,753) × 100 = 24.74%						(5,011 ÷ 21,753) × 100 = 23.04%								
건폐율(% (법정20%)	(73 ÷ 21,753) × 100 = 0.34%						(72 ÷ 21,753) × 100 = 0.3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합 계	-	21,753	5,381	1	73	73	62	-	21,753	5,011	1	72	72	62	감 370.0㎡
기 반 시 설	소 계	-	1,724	1,724	-	-	-	-	-	1,551	1,551	-	-	-	-	감 173.0㎡
	도로	-	952	952	-	-	-	-	-	1,074	1,074	-	-	-	-	증 122.0㎡
	광장	가	772	772	-	-	-	-	가	477	477	-	-	-	-	감 295.0㎡
	광장-1	가-1	(498)	(498)	-	-	-	-	가-1	(342)	(342)	-	-	-	-	감 156.0㎡
	광장-2	가-2	(232)	(232)	-	-	-	-	가-2	(93)	(93)	-	-	-	-	감 139.0㎡
	광장-3	가-3	(42)	(42)	-	-	-	-	가-3	(42)	(42)	-	-	-	-	
조 경 시 설	소 계	-	613	613	-	-	-	-	-	613	613	-	-	-	-	
	화 단	나	613	613	-	-	-	-	나	613	613	-	-	-	-	
휴 양 시 설	소 계	-	35	35	-	-	-	8	-	23	23	-	-	-	8	감 12.0㎡
	휴게소	다	35	35	-	-	-	-	다	23	23	-	-	-	-	감 12.0㎡
	휴게소-1	다-1	(23)	(23)	-	-	-	-	-	-	-	-	-	-	-	
	휴게소-2	다-2	(12)	(12)	-	-	-	-	-	-	-	-	-	-	-	감 12.0㎡
	팔각정자	①	-	-	-	-	-	1	①	-	-	-	-	-	1	
	파 고 라	②	-	-	-	-	-	1	②	-	-	-	-	-	1	
등의자	③	-	-	-	-	-	6	③	-	-	-	-	-	6		
유 회 시 설	소 계	-	335	335	-	-	-	-	-	335	335	-	-	-	-	
	어린이놀이터	라	335	335	-	-	-	-	라	335	335	-	-	-	-	
운 동 시 설	소 계	-	1,069	1,069	-	-	-	-	-	1,069	1,069	-	-	-	-	
	체력단련장	마	97	97	-	-	-	-	마	97	97	-	-	-	-	
	배드민턴장	바	972	972	-	-	-	-	바	972	972	-	-	-	-	
교 양 시 설	소 계	-	189	189	-	-	-	-	-	106	106	-	-	-	-	감 83.0㎡
	자연체험장	사	189	189	-	-	-	-	사	106	106	-	-	-	-	감 83.0㎡
	자연체험장-1	사-1	(126)	(126)	-	-	-	-	사-1	(47)	(47)	-	-	-	-	감 79.0㎡
	자연체험장-2	사-2	(63)	(63)	-	-	-	-	사-2	(59)	(59)	-	-	-	-	감 4.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편의 시설	소 계	-	1,343	1,343	-	-	-	-	-	1,242	1,242	-	-	-	-	감) 101.0㎡
	주차장	아	1,343	1,343	-	-	-	-	아	1,242	1,242	-	-	-	-	감) 101.0㎡
	주차장-1	아-1	(687)	(687)	-	-	-	-	아-1	(612)	(612)	-	-	-	-	감) 75.0㎡
	주차장-1	아-2	(656)	(656)	-	-	-	-	아-2	(630)	(630)	-	-	-	-	감) 26.0㎡
관 리 시 설	소 계	-	73	73	1	73	73	54	-	72	72	1	72	72	54	감) 1.0㎡
	관리사무소 (화장실)	자	73	73	1	73	73	-	1	72	72	1	72	72	-	감) 1.0㎡ 부호변경
	가로등	④	-	-	-	-	-	54	④	-	-	-	-	-	54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16,372	-	-	-	-	-	-	16,742	-	-	-	-	-	증) 370.0㎡
	녹지	-	16,372	-	-	-	-	-	-	16,742	-	-	-	-	-	증) 370.0㎡

라.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산책로 소계				575.0	952.0	-	-	-	증)122.0㎡
변경					551.0	1,074.0	-	-	-	
기정	산책로	-	1	1.5	14	21	진입로	진입광장	기존등산로	변경없음
변경		-	1	1.5	14	21	진입로	광장-3	기존등산로	
기정	산책로	-	2	2.0	71	142	진입로	진입광장	소로3-1	감)27.0㎡
변경		-	2	2.0	58	115	연결로	광장-2	광장-3	
기정	산책로	-	3	2.0	25	50	연결로	산책로-2	기존등산로	감)2.0㎡
변경		-	3	2.0	23	48	진입로	광장-2	기존등산로	
기정	산책로	-	4	1.5	18	27	연결로	주차장-2	배드민턴장	감)27.0㎡
변경		-	-	-	-	-	-	-	-	
기정	산책로	-	5	1.5	106	159	연결로	주차장-2	기존등산로	증)86.0㎡
변경		-	5	2.5	106	245	연결로	부지경계	기존등산로	
기정	산책로	-	6	1.5	128	192	진입로	산책로-5	관리사무소(화장실)	감)87.0㎡
변경		-	6	1.5	70	105	연결로	산책로-5	산책로-7	
기정	산책로	-	7	1.5	26	39	진입로	체력단련장	산책로-6	증)11.0㎡
변경		-	7	1.5	33	50	연결로	체력단련장	산책로-6	
기정	산책로	-	8	2.0	44	88	연결로	관리사무소(화장실)	관리사무소(화장실)	변경없음
변경		-	8	2.0	44	88	연결로	관리사무소(화장실)	관리사무소(화장실)	
기정	산책로	-	9	1.8	65	117	진입로	공원입구	기존등산로	증)29.0㎡
변경		-	9	3.0~4.5	42	146	연결로	부지경계	어린이놀이터	
기정	산책로	-	10	1.5	78	117	연결로	산책로-8	산책로-8	증)7.0㎡
변경		-	10	1.5	82	124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9	
기정	산책로	-	11	1.5	22	36	연결로	산책로-10	기존등산로	증)36.0㎡
변경	산책로	-	12	1.5	28	42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증)42.0㎡
기정	산책로	-	13	1.2	11	14	연결로	산책로-8	체력단련장	증)14.0㎡
변경	산책로	-	14	1.5~2.5	18	40	연결로	산책로-5	산책로-5	증)40.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51호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20. 3. 30.)에 따라 고시로 정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에 포함하고,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전화:032-440-3573, FAX: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우편번호 : 21554)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 폐지고시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63호(2019.7.15.)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를 폐지한
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59호

도시계획시설(학나래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학나래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학나래 근린공원	도시 공원	47,681	-	47,681	-	1944.01.08. (총고 1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연수구청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01,541.5	47,681			1/1				
1	선학동	325-3	전	410	410	황○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1/1				
2	선학동	325-4	전	701	701	김○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1/1	○세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압류	
									○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안○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	근저당권 설정	
3	선학동	325-5	전	7,428	7,428	김○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1/1	○세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압류	
									○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안○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	근저당권 설정	
4	선학동	325-7	대	546	546	홍○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1/1				
5	선학동	326-4	전	422	422	최○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1				
6	선학동	326-5	대	347	347	최○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1	심○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근저당권 설정	
7	선학동	326-6	전	605	605	최○한	인천광역시 간석동 ○	1/1	심○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근저당권 설정	
8	선학동	326-7	전	942	942	오○복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1/1				
9	선학동	326-8	전	1,792	1,792	오○복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화동 ○	1/2				
						오○복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1/2				
10	선학동	326-9	전	816	816	윤○훈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1/1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근저당권 설정	
11	선학동	326-10	답	945	945	이○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	1/1				
12	선학동	326-11	전	278	278	서○렬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1/1				
13	선학동	326-12	전	119	119	윤○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1/1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14	선학동	335	철도	229	229	기획재정부		1/1				
15	선학동	383	잡	984.4	394.4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16	선학동	383-1	도	292.6	292.6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7	선학동	383-2	잡	612.8	612.8	인천광역시		1/1				
18	선학동	383-3	도	67.7	67.7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19	선학동	383-4	잡	409.2	409.2	인천광역시		1/1				
20	선학동	383-5	대	384.6	384.6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1/1				
21	선학동	383-6	잡	511.7	511.7	인천광역시		1/1				
22	선학동	383-7	도	671.5	91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23	선학동	산61-4	임	52,413	174	원○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	1/4				
						원○석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	1/4				
						원○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	1/4				
						원○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1/4				
24	선학동	산65-1	임	2,678	2,678	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2578 /2678				
						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100/ 2678				
25	선학동	산65-9	임	81	81	김○남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51/330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64/330				
						윤○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215/ 330				
26	선학동	산69	임	4,977	4,977	온○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1/1				
27	선학동	산69-1	구	4,087	3,636	건설교통부		1/1				
28	선학동	산73-1	임	4,649	4,649	김○진	남구 옥련동 ○	6/16				
						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1/16				
						김○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	1/16				
						김○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1/16				
						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6/160				
						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36/1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미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글렌뷰, 사우스 세미놀 드라이브 ○	6/160				
						김○순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오크빌 ○	6/160				
						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20				
						원○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	1/20				
29	선학동	산73-3	임	4,066	4,066	최○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	1/1				
30	선학동	산76	임	3,570	3,570	전○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	12/75				
						전○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	8/75				
						박○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	15/75				
						박○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	10/75				
						전○정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	30/75				
31	선학동	산77	임	496	496	김○준	연수리○	1/1				
32	선학동	산78-1	임	2,281	2,281	순천○종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33	선학동	산78-2	임	1,142	1,142	이○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1				
34	선학동	산78-5	임	1,587	1,587	순천○종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6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88호	주식회사 스카이정보기술 김창균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용품 유통단지 39동 226호(송현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변경일	변경사항	주관 부서
제2000-0- 인천광역시사-167호 (2000.7.27.)	인천시민사회 단체연대	김일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3, 602호(계산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여론형성	2020.3.31.	사무소 소재지	공동체 협치 담당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36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일원화하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583,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37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무처리 규정으로 통합 변경코자함.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 제3호 가목의 수집·운반 주간작업 원칙에 따라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반입시간을 조정(안 제4조 별표3)
-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7~11조 및 제13조)
- 반입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대상을 확대(반입차량→사용자)하여 반입폐기물의 성상 개선 유도(안 제12조 별표5)
-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고시」에 별도로 규정된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반입규정을 동 규정에 통합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규정 일원화(안 제2~4조, 제6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583,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지역)

- 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지역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 반입량을 감안하여 반입 허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반입대상 폐기물)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 성상은 압착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압축차량으로 수거할 경우 성상보존을 위하여 차량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로 반입하여야 하며 특히 성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검정 또는 마대 등에 담은 폐기물은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사업소장·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 홍보와 분리수거를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입허용시간) ① 반입대상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등 및 폐기물 처리업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일요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반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그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폐기물반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6조(반입폐기물 수집현황표 작성) 인천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하는 차량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 폐기물 수집 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반입량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하여 그 중

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 ② 반입차량이 반입폐기물을 계량할 때는 차량 운전기사의 인원이 탑승할 수 없다.

제8조 (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계량에 대한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기록 및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수수료 납입통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당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 무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폐기물반입차량 준수사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등록한 폐기물 운반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입차량은 별표 4에 따른 차량도색 및 구를 표시
2. 출입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
3. 반입차량 청결 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청결유지(세륜, 세차 등)
 - 나. 적재함밀폐, 천개장치설치, 악취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 및 오수·누수방지
 - 다. 삭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반입의 제재기준) ① 조례 제10조 및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

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입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출증을 반입차량 운전자에게 교부하여 반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출계고서를 폐기물 반입자에게 발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사항을 폐기물 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의 회계 처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의 제재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적발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지역(제2조 관련)

시 설 명		우선 반입지역	반입지역	
인천광역시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중구	인천광역시 전지역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중구		
		동구		
		계양구		
		서구		
인천광역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인천남부권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중구
				연수구

[별표 2]

반입대상 폐기물(제3조 관련)

시설명	구분	세부품목
청라·송도 자원환경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이 안되는 폐종이류 - 나무조각류 -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화초류 - 비닐류 - 가정에서 배출되는 장롱, 서랍장, 목재 싱크대 등의 대형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그 밖에 불연성 및 재활용품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
인천남부권 광역생활 자원회수센터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 상자류, 종이팩, 신문지, 노트 등 ※ 문서세단기에 세단한 종이류,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 여러 조각으로 찢거나 생활폐기물로 최종 처리된 종이류 등은 반입제외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기타 재활용 가능 병류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부탄가스통은 용기에 구멍을 내어 반입(화재방지)
	금속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금속류와 연결되어 있는 비 금속류는 분리하여 별도 반입
	플라스틱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PET류 : 음료수병(콜라, 사이다, 주스 등), 생수병, 간장병, 막걸리병 등 · PE류 : 물통, 샴푸및세제류 용기, 백색막걸리통, 우유병 등 · PP류 : 상자류(소주, 맥주, 콜라 등), 된장통, 물바가지, 세수대야 등 · PS류 : 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 용기 등 - 스티로폼류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및 완충재 · 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별표 3]

반 입 시 간(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간	시 간
인천광역시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연 중 01:00 ~ 14:0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연 중 05:00 ~ 12:00
인천광역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연 중 01:00 ~ 14:0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연 중 05:00 ~ 12:00
인천남부권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월~금 00:00 ~ 12:00

※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 주중의 공휴일도 반입을 허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반입차량 도색 및 표시(제11조 관련)

차량 도색	문구 표시
녹색	적재함 양 옆면에 지역·폐기물류·운반업소명·전화번호를 50cm이상 크기의 흰색글씨로 표시

[별표 5]

반입 제재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 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반입차량별로 반입을 제재함을 원칙으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한다.

2. 반입차량 제재기준

구분	위반행위	근거 규정	1차	2차	3차	4차	비고
1	○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입 등록을 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제10조 제1호 및 제4호	반입 금지				
2	○ 불연성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10%이상 혼합쓰레기 반입시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이 5%이상 혼합 쓰레기 반입시 (마대자루 및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과 검정색 봉투 등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불투명 봉투에 담긴 폐기물은 내용물 전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경고	반입 금지 3일	반입 금지 10일	반입 취소	반출 조치

구분	위반행위	근거 규정	1차	2차	3차	4차	비고
3	○ 출입증 대여	규정 제5조 제2항	경고				
4	○ 반입폐기물 계량시 운전기사 이외 인원 탑승	규정 제7조 제2항	경고				
5	○ 차량도색 및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위반	규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경고				
6	○ 행정 지시사항 불응 (업무방해, 적발통지서 날인불응, 안전 사고예방 준수사항 불이행 등) ○ 차량박스 교체	규정 제11조 제4호	경고				

3. 사용자 제재기준

위반행위	근거 규정	제재 내용
조례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대한 사용자 반입차량의 월간 위반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조례 제10조 제8호	해당 사용자의 반입차량 전체에 익월 반입금지 3일 처분한다. 다만 반입 정지일수에 시설 휴일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 표 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차량등록번호	
차종및형식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주)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바탕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녹색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황색
3. 하수슬러지: 흰색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등록신청서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차종 및 형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		
변경(말소, 재 발급)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사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의 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시)

[별지 제4호서식]

반입 폐기물 수집 현황표

차량번호		운반자	
수거일시		수거지역	중구, 연수구
수거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수거장소		수 거 폐 기 물
	배출 유형	아 파 트	
		단독주택	
		상 가	
		가 로	
		기 타	
업체명		수거자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반입 폐기물 수집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제 호	
반 입 필 증 (소각장보관용)		반 입 필 증 (반입자보관용)	
구별		구별	
반입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	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	
운전자(성명)		운전자(성명)	
반입장소		반입장소	
반 입 량	kg	반 입 량	kg
<p>「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p> <p>년 월 일 취급자 (인)</p>		<p>「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p> <p>년 월 일 취급자 (인)</p>	

[별지 제6호서식]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

적발일시	
반입구	
운반업소	
폐기물종류	
차량번호	
위반사항	

상기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인)

적발자: (인)

확인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반출증		
반입일시		
차량번호		
반입량		
폐기물의종류		
지역명(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반출내역	반출일시	
	차량번호	
	반출량	
	반출사유	
작성자	소속	
	성명	
확인자	소속	
	성명	
<p>상기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반입조치 기준에 위반된 폐기물로서 반출하였기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장</p>		

[별지 제8호 서식]

반출 계 고 서

주 소:

기관명:

운전자:

대표자성명:

귀 (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군·구)에서 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본 소각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본 계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본 건 이행을 방치함은 소각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정된 시간내 미 반출 시에는 본 시설에서 혹은 제3자에게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 (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군·구)으로 부터 징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는 바입니다.

반출 대상 폐기물

반입일시	반입지역	운반차량	폐기물종류	반입량	비고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8조(지역주민의 감시)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반입의 제한) ○ 제18조(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시행규정)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고시
관련법규 정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고시(폐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고시」에 별도로 규정된 반입규정을 동 규정에 통합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으로 변경 계획

관계법령 발췌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0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 차량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생활폐기물 중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잔재물을 소각장에 반입하는 경우
 - 나. 송도자원순환센터에 하수슬러지를 반입하는 경우

-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등록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기 타

공 고 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25호

2020.3.1.자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3. 31.

[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